임원 자격에 관한 규정

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

- 임원 자격에 관한 규정 -

1. 임원 자격 규정 제정
   : 당사 정관 제27조 2항에 의거 회사 규정으로 정한다.
2. 임원
   : 당사 정관 제 26조에 의거 대표이사, 이사, 감사를 말한다.
3. 임원의 자격
   ① 임원은 회원인 주주의 자격이 상실되면 그 임기도 만료되어 당연 퇴직한다.
 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.
    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  2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 3.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 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  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  6. 우리 회사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았거나 출입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  7. 임원으로 재임하다가 임기만료 전에 사퇴하거나 주주자격 상실(주주권양도 포함)로 당연 퇴직한 사실이 있는 회원
         (단, 입후보를 위하여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     8.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
      9. 신규로 주주회원이 되거나 재취득하여 주주회원이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(상근이사 제외)
   ③ 법인인 주주회원은 그 대표자만 임원이 될 수 있다. 다만 법인 주주회원의 대표자가 주주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 즉시 자연인으로 주주회원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주주회원이 된 날은 법인과 자연인 중 처음으로 주주회원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.
4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정관 및 본 규정 3조 ③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. 12. 19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. 3. 2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. 4. 1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. 12. 3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. 12. 14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. 2. 1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. 2. 1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. 11. 14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. 1. 11부터 시행한다.